



# 안후이성 샤오샤오과학기술실업유한공사 VS 안후이성 쩌시현 경공업 체인공장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06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00)知终字第10号
판결 일자	2001년 4월 4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안후이성 샤오샤오과학기술실업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안후이성 쩌시현 경공업 체인공장, 2. 장커페이, 3. 평청쑤우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53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적용 가능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제184조		
영업비밀	체인슬리브 금형 및 생산공정 기술비밀과 고객명단 등 경영비밀		
키워드 (Keyword)	감정의견(鉴定意见), 대질(质证), 공지기술(公知公用技术)		

##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안후이성 샤오샤오과학기술실업유한공사(이하 ‘샤오샤오공사’)는 1998년부터 체인슬리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장커페이와 평청쑤우는 원래 샤오샤오 공사의 직원이며 비밀보호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협약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원심 피고 장커페이와 평청쑤우는 1999년부터 원심 피고 안후이성 쩌시현 경공업 체인공장(이하 ‘체인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체인공장이 1999년 2월부터 체인슬리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샤오샤오공사는 이를 발견한 즉시, 장커페이를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였고, 장커페이는 샤오샤오 공사에 해명의 글을 썼고, 거기에 “저는 생산 공정에서 종사하며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체인공장에게 일부 분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제공한 모든 원문 자료를 회수하였지만, 저는 체인공장의 복사본 보유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샤오샤오공사는 1999년 12월 10일 원심 피고들을 상대로 체인슬리브 금형 및 생산 공정 기술과 고객명단 등 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양측의 기술이 유사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샤오샤오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샤오샤오 공사의 기술비밀과 경영비밀은 비밀보호 대책을 세우는 등 상업비밀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양 측의 기술이 다르다고 본 감정의견을 믿을 수 없다.

샤오샤오 공사 측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는 상업비밀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양 측의 기술이 다르다고 본 지린공업대학 체인 전동 연구소 감정의견은 합법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다.

샤오샤오 공사의 기술은 공지기술이며, 체인공장은 자체 기술로 상품을 생산한 것이다.

### 04 판결 요지

<감정의견>에 의하면, 샤오샤오 공사의 슬리브 롤링 제작방식의 금형과 공정기술이 스태มป์ 업계가 이미 보유한 기술 및 체인 업계가 현재 보유한 기술과 비교했을 때 같거나 유사하므로, 샤오샤오 공사의 기술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기술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샤오샤오 공사의 슬리브 롤링제작 방식의 금형 설계도와 체인공장의 설계도는 동일한 규격의 슬리브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금형 설계도가 아니며, 샤오샤오 공사는 슬리브 롤링 제작 방식의 금형 설계도는 오직 장비 설명도와 부분 부품 설계도 밖에 없어서, 직접적으로 금형의 생산에 이용할 수 없으며, 양자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샤오샤오 공사의 기술비밀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원고 샤오샤오 공사가 7개 체인 제조 기업에 슬리브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원심 피고 체인공장은 체인 조립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미 예전부터 그 중의 대부분의 기업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일체화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 일부 기업과의 거래 관계는 샤오샤오 공사보다 늦게 형성되었지만, 평청쑤우 때문이 아닌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므로, 샤오샤오 공사의 경영비밀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 05 Key Point

---

한국 법원에서 지재권 침해 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에 '증거의 인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국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质证(한중사전의 번역:대질)'이라고 하는 증거의 인부절차를 거치게 된다.

---

'质证'이라 함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제3자가 재판부의 주도하에, 당사자 및 제3자가 제출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및 증명력의 유무, 대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하고 변호하는 활동 혹은 과정을 일컫는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8조에도 『증거는 응당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상호 대질(质证)을 해야 한다. 국가의 기밀, 상업비밀 혹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인 경우 응당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법정에서 제시가 필요한 경우, 법정을 공개하고 제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质证'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